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0. 11. 26.(목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### 3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예산 지원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4. 주요내용

- “교육생태계” 등 용어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)
- 예산지원 방식을 구체화함(안 제6조)
-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, 용어의 정의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 “교육생태계”와 “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”의 정의를 추가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

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,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운영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- 아울러, 안 제11조에서는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음.
- 201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충청도내 시·군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, 시·군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요구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